

□ 특별기고/ 강인순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대 수협 상호금융 기회로 삼아야

일자: 2025-07-25 10:45

수정: 2025-10-20 09:36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부터 금융소비자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법은 1995년 12월 공포되었고 이 법에 근거한 예금자보호제도는 1997년부터 시행되었다.

은행, 저축은행 등의 금융회사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며 상호금융의 경우에는 각 중앙회에서 설치한 예금보호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예금자보호가 이루어진다.

9월1일 한도 1억 상향

예금자보호제도 초기에는 2,000만원까지 보호가 되었으며, 2001년부터 보호한도가 5,0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그 후 우리나라의 예금보호한도는 금융시장 및 경제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2024년까지 계속해서 5,000만원을 유지해왔으나 2024년 12월27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이에 따라 2025년 9월부터 기존 5,000만원이었던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었다.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안전성이 제고됨과 동시에 5,000만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이 분산예치에 대한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금융소비자의 편의와 금융권의 안정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로 인한 변화에 대한 금융권의 우려도 존재한다. 보편적인 관점에서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은행권에 있던 예금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때 유입되는 예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제2금융권 예금취급기관 간의 금리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높은 금리로 대출을 실행해야하기 때문에 고위험대출에 대한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이는 부실가능성이 높은 고위험대출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소형 상호금융기관들의 예금유출 가능성도 있다. 예금보호한도가 올라감에 따라 5,000만원 이상의 예금을 제2금융권 내에 분산 예치하였던 금융소비자들의 분산예치 유인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상호금융업권 내의 자금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업권 내 자금이동이란 소형 조합에서 예금이 유출되어 특정 조합으로 예금이 집중되는 자금 쏠림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 또한 회원조합들로 하여금 금리경쟁을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조합 상호금융이 금리를 올리면 부실대출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상호금융업권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하는 상황이다.

상호금융 체질 개선

이미 정책당국에서도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예보한도상향 TF를 운영하고 예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제2금융권 부실대출 방지를 위해 다양한 규제방안을 논의 중이다. 수협 상호금융에서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앞서 선제적으로 내부심사기능과 리스크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등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고 있다.

수협 상호금융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기회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 업권 간의 예금이동으로 인한 금리경쟁, 부실대출 가능성은 우려하는 것보다 크지 않을 수 있어 체계적인 고객 관리 및 지역내 고액자산가 확보 등을 통한 예금확대가 이루어진다면 수협 상호금융의 체질개선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예금기반 확대를 위한 VIP마케팅, 비대면고객 확대 등의 방안에 대하여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수협 상호금융이 새로운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어민신문=어민신문] eomin@eomin.co.kr